

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김정태 의원입니다.

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이 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 내 조형물등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